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행위에 대한 직권 감사 도입〉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01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행위에 대한 직권 감사 도입 (안 제52조의7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8.

다. 회 부 일 : 2025. 12. 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검찰·감사원 등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2차 피해 방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행위에 대한 직권 감사 도입 (안 제52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성비위감사 등</u>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관련 비위행위 또는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이하 이 조에서 “성비위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성비위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현행법¹⁾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의뢰 규정은 공공기관 임원에만 적용될 뿐, 공공기관의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성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성비위행위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나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성비위행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現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인사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성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범위를 공공기관 직원에까지 확대하고, 성비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성비위행위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의 요건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직권 감사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인사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비위행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현행법 제52조의3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현재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조치가 가능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수사, 기관 내부의 사실조사 및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점검이 가능하므로 현행법상 별도의 직권 감사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7(성비위감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제53조의2제2호에 따른 성관련 비위행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이하 이 조에서 “성비위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성비위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51